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1 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권성동·서천호·백종헌

우재준・윤한홍・정성국

임종득 • 강선영 • 김대식

박상웅 • 최은석 • 박수영

곽규택 · 김은혜 · 김승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,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 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또한,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 곡될 우려가 높음.

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,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3년"을 "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"으로, "사람"을 "사람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	2
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	
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	
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	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
후 <u>3년</u>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	<u>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</u>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<u> 주한 기간이 5년</u>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
록대장에 올라 있는 <u>사람</u>	
<u><단서 신설></u>	사람 <u>.</u>
	<u>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</u>
	<u>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</u>
	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
	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
	우로 한정한다.